

<p>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납동에서 신천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우신운수의 420번 노선버스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노선 : 풍납동(영파여고) → 중앙병원 정문 → 롯데월드 → 광양불고기 → 등기소 → 탄천제2교 → 학여울 → 수서경찰서</li> <li>- 제2노선 : 풍납동(영파여고) → 중앙병원 정문 → 롯데월드 → 종합운동장 → 삼성역 → 학여울 → 수서경찰서까지 연장운행 요망</li> </ul> </li> </ul> <p>3. 취지설명 요지 (취지설명 : 이용부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파구 잠실·석촌·삼전동 일대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관할 경찰서가 수서에 입지하는 등 강남구 수서지역과는 하나의 생활권이나, 수서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음.</li> <li>○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풍납동에서 신천역까지 운행하는 우신운수(420번)의 버스노선을 강남구 수서지구까지 연장운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니 지역 주민의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p>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관리실에서는 주민의 요구대로 노선연장운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서경찰서 주변 회차구간이 편도 1차선에 불법주차가 많아 시내버스운행이 적정치 못하고</li> <li>- 연장노선구간 중에 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li> </ul> </li> <li>○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제1노선은 지난 '99년 6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잠실역에서 신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중에서 수서경찰서까지 연장하는 노선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하였으나,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li> <li>○ 수서경찰서 주변 회차구간 불법주차는 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속을 통하여 불법주차를 없애고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문제이지, 버스노선 연장 불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li> <li>○ 좌회전 문제도 경찰과 협조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생각함.</li> <li>○ 그 동안 시내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중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므로, 이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버스조합이사장과 부이사장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측 이익을 대변하여 왔고, 버스회사간의 이해상충문제도 영향력 있는 회사의 주장이 관철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li> <li>○ 그 한 예로 상도터널에서 송실대까지 버스노선 연장운행청원도 관할구청과 교통관리실에서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버스노선조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결국 회사간 이해 대립으로 부결되므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li> <li>○ 이와 같이 버스노선조정민원은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집행부도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점이 있었던 것임.</li> <li>○ 따라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이익집단의 주장만 관철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 회사간 이해가 상충할 경우 조정하는 것도 관의 의무이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관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li> </ul> <p>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6. 토론요지 : 생략</p> <p>7. 소위원회 : 미구성</p> <p>8. 심사결과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p> <p>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11. 의견서 : 별첨</p> <p>.....</p> <p style="text-align: center;">의 견 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명 : 버스노선(420번)연장운행청원</li> <li>○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li> </ul>
---	---

○ 채택의견

- 송파구 잠실·석촌·삼전동 일대는 강남구 수서지역과는 하나의 생활권이나, 수서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우신운수(420번) 버스노선을 연장 운행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본 청원에 대하여
- 교통관리실에서는 주민의 요구대로 노선연장 운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수서경찰서 주변 회차구간이 편도 1차선에 불법주차가 많아 시내버스 운행이 적절치 못하고, 연장노선구간 중에 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제1노선은 지난 '99년 6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잠실역에서 신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중에서 수서경찰서까지 연장하는 노선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하였으나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 수서경찰서 주변 회차구간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함으로써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좌회전 문제에 대하여도 경찰의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 시내버스 노선조정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서 조합측 이익을 대변하여 왔고, 버스회사간에 이해상충문제도 영향력 있는 회사의 주장이 관철되어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익집단의 주장만이 관철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관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책임행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 본 청원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의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00. 5.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의결(처리)건수 : 17건(원안동의 15건, 수정동의 1건, 반대의견제시 1건)
- 안전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414	1999.10. 5	1999.10. 9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0.3.10)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0.4.27)	보 류  반 대 의견제시
518	2000. 2. 2	2000. 4. 17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0.3.10)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0.4.27)	보 류  수정동의
544	2000. 2. 29	2000. 3. 3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0.3.10)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0.4.27)	보 류  원안동의
573	2000. 4.12	2000. 4. 17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0.4.27)	원안동의